재해위로금 지급 관련 안내 사항

□ 재해 인정기준

○ 태풍·강풍, 홍수, 호우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한파, 폭염, 낙뢰, 가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

○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의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

○ 재해인정 기준 제외

- 경작실패 등 재해와 직접 연간이 없는 피해
-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·확대된 피해

□ 재해위로금 지급대상

○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○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○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적용 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○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○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적용대상자

○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
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
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선순위 유족 1명

□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

피해구분		재 해 위 로 금 지 급 기 준	지급액(만원)
인명피해	사망(실종)	사망 또는 실종	500
	부상	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	30
	※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(실종)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		
주택피해	전 파	기둥·벽체·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500
	반 파	기둥·벽체·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250
	침 수	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	50
	공동주택화재	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(아파트 등)의 화재로 피해금액이 2,000만원을 초과한 경우	100
		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(아파트 등)의 화재로 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 2,000만원 이하인 경우	50
	※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빈집,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		
기타재산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* 1~80등급인 경우 ※ 재난지수 10,001~49,500이상	50
	소규모	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~100등급인 경우 ※ 재난지수 300~10,000	30
공동이용시설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~80등급인 경우 ※ 재난지수 10,001~49,500이상	500
	소규모	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~90등급인 경우 ※ 재난지수 5,001~10,000	250

(주1) 재난등급 또는 재난지수라 함은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별표 3의 기준표를 말 말함

(주2) 복합피해 동시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급방법

- 인명·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·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함

(주3) 주택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함

※ 기타재산피해

- **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그와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족이 경작(경영)하는 농경지,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.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의 피해**
- **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**
- **임차하여 실제 거주 중인 타인소유의 주택의 피해**
- **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거주중인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의 재해 시 가재도구 등의 피해액을 산정하여 기타재산피해로 지급**